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3. 11 선고 2019가단382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(개명 전: C)

소송대리인 D

변론 종결 2020. 2. 19

판결 선고 2020. 3. 1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E 임야 32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1-L5, 8, 9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지상 벽돌 기와지붕 1층 주택 52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 52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는 평택시 E 임야 321㎡(이하 '이 사건의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피고는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벽돌 기와지붕 1층 주택의 소유자인데,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~15, 8, 9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52㎡ 지상에위 주택 중 일부가 있는 사실은 갑 저다호증의 기재,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안중지사장에 대한 감정축타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,피고는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~15, 8, 9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52㎡를 침범하여 위치한 피고 소유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,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조영진

별지